

제175회(정례회)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

제4호(부록)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

목 차

1.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면
○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	4면
2.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	6면
○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	19면
3.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5면
○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	32면
4.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	36면

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7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6.

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1. 개정이유

2006년 12월 30일 「지방세법」 제165조의 면허세 납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면허세의 납기를 「지방세법」에 맞게 개정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법 제16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면허세를 미리 내는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자가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로 단서 규정 신설 (안 제1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세법」 제165조

서울특별시 세제과-2664(2007.03.02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2) 입법예고(2007.5.11 ~ 2007.5.31)결과 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법 제16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면허세를 미리 내는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자가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납기)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 2.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매년 분에 대한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서신설)</p>	<p>제16조(납기)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<p><u>다만, 법 제16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면허세를 미리 내는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자가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</u></p>